8. 증거신청 방법



증거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,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.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구술로 증거신청을 한 후 채택의 결정이 된 다음 다시 서면으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기일 전에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증거의 신청을 함에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증인신문신 청시에는 성명·주소 등으로 증인을 특정하여야 하고,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시에는 문서 의 표시, 그 취지 및 소지자 등을 밝혀야 하며, 검증·감정의 신청시에는 검 증·감정의 목적을 표시하고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한다.

또한,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증인여비를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할 것을 예정하여 업무의 편의상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대동하고 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"증인대동, 여비직불"이라고 표시하고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당사자가 증인에게 증인여비를 직접 지급하고 변론기일에 증인을 대동하여야한다.